

#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사업 주요 정책 추진 현황

2023. 1.





**Ai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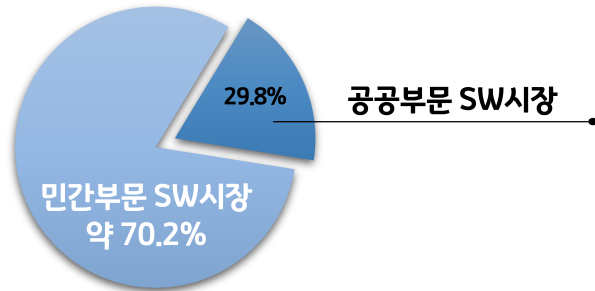
## Contents

- I | SW분야 표준계약서
- II | SW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
- III | (공공부문) 상용SW구매 의무화
- IV | SW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
- V | (SW기술성평가기준) 차등점수제 도입

## 국내 SW시장의 약 70%를 차지하는 민간SW시장의 법적 보호장치 강화 필요

### 민간부분 SW시장의 높은 비중

국내 소프트웨어 민간부분 비율(%)



- ◆ 민간부분 SW시장은 11조 여원으로 전체 국내 SW시장\*의 약 70%에 달하는 등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
\* '21년 국내 SW 시장은 15.7조원 예상(IDC), 공공SW시장은 4.68조원
- ◆ 민간부분 SW시장의 위축은 전체 국내 SW시장의 경쟁력의 저하와 연계

### 불공정 거래 관행의 법적 보호장치 미흡

- ◆ 공공SW사업의 경우 『소프트웨어진흥법』 등 관련 법령 내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 장치 마련·시행 중이나,
  - 과기정통부장관은 공공SW사업에 대해 투입인력 관리 금지, 하자담보 책임기간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를 검토(18개 기준)하고 제도 준수 권고
- ◆ 민간부분 SW시장의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
  - 특히 ‘하도급법(약칭)’이 미적용되는 사안\*의 경우 보호 공백 발생

원사업자	수급사업자	하도급법 적용 여부
비(非)SW기업(또는 SW기업)	SW기업(또는 비(非)SW기업)	X
중소SW기업	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SW기업	X
연매출이 수급사업자에 비해 낮은SW기업	연매출이 원사업자에 비해 높은SW기업	X
연매출 10억원 미만 SW기업	전체	X

\* 상세 내용은 하도급법 제2조 참조

국내 SW시장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민간부분 SW사업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 대책 수립 필요



##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면 개정으로 민간SW사업 계약 '공정계약 원칙' 도입

### 민간부분 SW사업 내 공정계약 원칙 도입

- ◆ 민간부분 SW사업에도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 필요성 공감
- ◆ 『소프트웨어 진흥법』 전면 개정으로 민간부분 SW사업 포함 '공정계약 원칙' 적용
  - \* 소프트웨어 진흥법 '20년 12월 10일 시행
- ◆ 공정계약 원칙(법 제38조)을 법적 근거로 과기정통부 장관 주관으로 **소프트웨어 표준계약서 마련**

#### SW표준계약서 인식조사 결과 ('22.8, KOSA, 401개사 대상)

- SW표준계약서(SW사업자용 및 SW종사자용 포함)에 대한 SW기업의 인지도(52%, 209개사)
- SW사업자용 SW표준계약서 활용 경험이 있는 SW기업(55.6%, 223개사)
- SW종사자용 SW표준계약서 활용 경험이 있는 SW기업(42.4%, 170개사)
- \*21년 12월 대비 약 2.4배 증가

### 공정계약 원칙(제38조) 주요 내용

#### 01 법령이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 교부 의무

##### 필수 기재 사항

- 계약의 목적과 범위, 계약기간 ★ **법률**
- 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과 확정시기
- 확정된 과업내용, 기간, 금액 변경 절차
- 지체상금, 위약금, 그 밖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
-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과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
-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, 갱신
- 선금금이나 기성금 약정 시 지급 시기, 방법 및 금액



#### 02 한쪽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 무효

- 상당한 이유 없는 과업 및 계약내용의 변경 불인정
-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전가
- 일방에게 유리하게 정하여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
- 손해배상책임의 과도한 경감 또는 가중
- 상당한 이유없이 법령상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

#### 03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의 마련 및 사용 권장

#### 04 표준계약서 또는 약관규제법에 따른 표준약관을 사용한 계약은 공정한 계약으로 간주

##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관행 개선 및 SW시장 활성화 도모

### 표준계약서의 정의

- ◆ 소프트웨어사업의 **공정한 거래질서**를 구축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과업의 확정 및 변경 절차, 계약금액 및 기간 등의 변경 절차, 손해배상, 지식재산권 등 **계약의 공정성과 계약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을 필요가 있는 사항\***을 포함한 계약서

\*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0조(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참조)

	SW사업자 표준계약서(4종)		SW종사자 표준계약서(2종)
도입 목적	SW사업 발주자와 수주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<b>SW사업자 보호 강화</b>		불공정, 부당한 형태의 <b>소프트웨어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및 공정한 계약 관행 마련</b>
종류	① 정보시스템 개발·구축 ②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③ 상용SW 공급 구축 ④ 상용SW유지관리		표준근로계약서, 표준도급계약서(용역) ※ SW종사자의 실질적인 계약 형태(도급 또는 근로)에 따라 활용 필요
사용시기	SW계약기간 개시 이전 계약서 작성 필요		
계약상대방	공공SW사업	원사업자* ↔ 수급사업자 *발주자(국가기관등)와 원사업자간 계약은 <b>국가계약법</b> 을 따름	원사업자(또는 하수급자) ↔ SW종사자* (원사업자와 계약 맺은 발주자가 존재)
	민간SW사업	① 민간 발주자 ↔ 원사업자 ② 원사업자 ↔ 수급사업자	

## 민간 SW시장의 주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필요

### 계약내용과 이행과정 관련 사례

- ◆ 불명확한 과업 범위로 인한 위험부담 수주자 전가
  - 불명확한 과업범위로 실질적인 과업변경 시 위험부담을 수주자에 모두 전가, 발주자의 비용부담 회피
- ◆ 수주자의 정당한 계약해지 제한 및 과도한 손해배상책임
  - 과도한 과업변경 발생시에도 수주자의 정당한 계약해지권 제한
  - 수주자의 책임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, 과도한 배상 책임 부과
- ◆ 과도한 투입인력 관리
  - 과도한 투입인력관리(업무수행 직접감독, 작업장소 일방 지정)
  - 과업완료 후 실제투입인력 파악 계획대비 미투입 인력 감액 정산 등의 사례 존재

※ 출처 : 소프트웨어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연구(SPRI, 2020. 1월)

### 검수와 지체상금 관련 사례

- ◆ 인수전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, 수주자 전가
- ◆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또는 지체상금액 한도 미설정
  - 공공SW사업의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르지만 민간시장의 일부사례는 공공SW사업의 지체상금율의 4배 이상을 요구

### 지식재산권 귀속 및 하자담보 책임 관련 사례

- ◆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불인정, 발주자 단독 소유
- ◆ 무상 하자보수와 유상하자보수 무분별하게 병용
  - 무상 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별도의 유상계약 체결 전까지 지속하여 수주자가 관리 책임 부담



##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기관간 협업 강화

### SW모니터링단 중기부 참여, 회의 정례화

- ◆ (중기부 참여) 非SW기업의 SW용역 위탁에 대해 **상생 협력법에 따라 불공정행위 조사·예방** 등 적극 대응
- ◆ (회의 정례화) 불공정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제도개선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반 회의 정례화\*
  - \* 분기 1회, 격월 간격 실무회의 개최 등

###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

- ◆ **준법 유도 및 신고 활성화**를 위해 3개 부처 합동 교육 실시
  - (온라인) 공공 SW 수·발주자 역량강화 교육(연간 약 2,800명 교육)
  - (오프라인) 지역의 SW진흥기관 주관 행사 활용한 방문교육 등
- ◆ SW분야 표준계약서(과기정통부) 및 표준하도급계약서(공정위)를 각 기관이 함께 보급하여 사용 활성화를 유도

### 불공정행위 사건 이첩 및 실태 조사

- ◆ **불공정 거래 사건 이첩**
  - 모니터링단\*에서 접수한 사건 중 **위법 소지 사건**을 처분 권한이 있는 **관계 부처로 이첩해 신속한 해결 유도**
    - 국가기관등의 장의 SW사업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    - SW기업의 SW용역위탁 : 공정거래위원회
    - 非SW기업의 SW용역위탁 : 중소벤처기업부
- \*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과기정통부·KOSA를 중심으로 「민관합동 SW 불공정행위 모니터링단」이 2014년부터 운영 중
- ◆ **실태조사 추진**
  - 과기정통부·중기부·공정위 합동으로 SW 수탁기업 대상 불공정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
    - SW 수탁기업 대상 피해 사례 및 건의 사항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거래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직권조사·제도개선에 활용

공공부문의 민간 상용SW를 우선 구매토록 의무화 위한 「소프트웨어진흥법」 개정 추진('22.下~)

## SW진흥법 개정 방향

- ◆ 'SW사업 영향평가' 강화로 공공부문의 민간 상용 SW를 구매 촉진
- ◆ (기존) 발주기관이 자체 평가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체 평가 결과를 검토·개선 권고하나, 권고에 불과하여 이행력 부족
  - ※ 3개년('18~'20년) 권고 반영률은 48.5%에 불과(SW생태계 혁신전략, '21.6.17)
- ◆ (개선) 과기정통부 장관이 발주기관의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해 개선 요청 시,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토록 의무화

## SW진흥법 일부 개정(안)

- ◆ (실시 기한)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시기\*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, 입찰공고 이후에도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
  - \* (기존) 입찰공고 이전까지 실시토록 하여 이미 입찰공고를 한 상황에서는 시장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이를 호소하기 어려웠음
  - (개선) ① 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 수립 시 → 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   ② 발주 시 → 발주하기 전까지
  - ③ SW사업자가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→ 요청받은 후 30일 이내
- ◆ (개선 요청) 과기정통부 장관이 발주기관의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·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, 발주기관은 개선 요청을 이행토록 의무화(제43조제4항)
  - ※ (기존) 과기정통부 장관은 「지능정보화기본법」에 따라 점검·분석하고 의견 제시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검토의 실효성 부족
  - (「소프트웨어진흥법」상으로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검토 등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 부재))



‘전략물자’란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 그리고 이를 운반하는 수단인 미사일의 제조·개발·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,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 (\* 소프트웨어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제5부 ‘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분야’로 분류)

## 수출통제제도 배경

- ◆ 전략물자\*의 테러지원국 등으로의 이전 차단을 위해,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SW 암호화 기능 등\*\*이 전략물자로 분류
  - \* 품목은 바세나르 협정 회원국 만장일치 결정 후 산업부 장관이 고시(전략물자수출입고시)
  - \*\* 대부분의 SW에서 활용되고 있는 SSL, HTTPS, VPN 등의 암호 프로토콜이나 모듈이 포함되거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키 길이가 56비트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
- ◆ 암호화 기술은 대부분의 SW에서 활용되고 있어 대다수의 SW기업이 허가를 받아야 하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응 여건 열악

## 현황 및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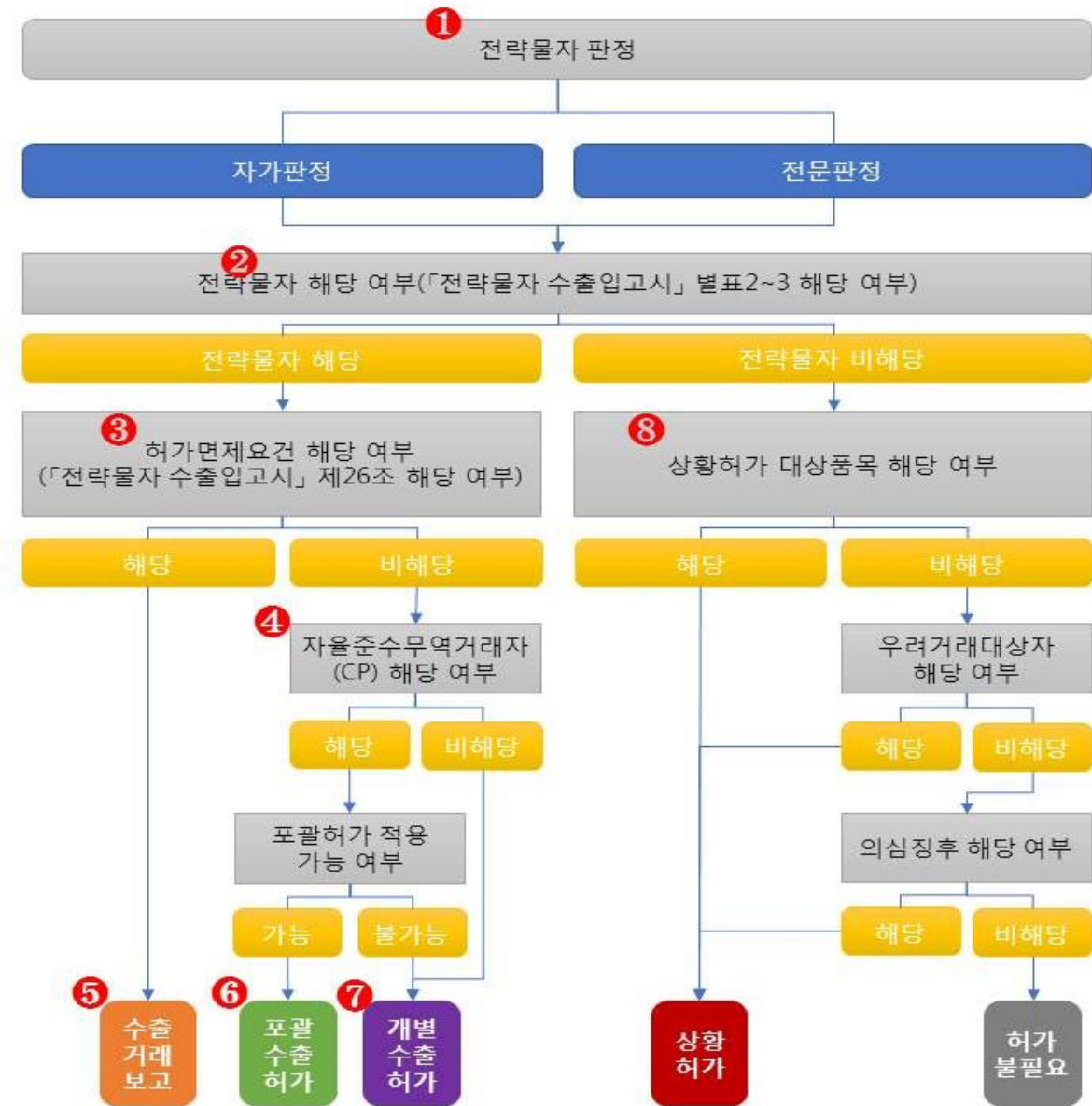
- ◆ 대다수 SW기업들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허가없이 수출 후, 단속을 통해 형사처벌\*을 받는 사례 발생
  - \* 7년(5년)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등 가격의 5배(3배)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, 과실범에 대한 제재, 양벌 등의 제재(대외무역법 제53조)
- ◆ 중소기업 내 자원 부족으로 전략물자 대응을 위해 **필요한 기업 내 전담조직, 인력 등**(판정 및 수출 관리, 감사 등의 담당자) **마련 어려움**
- ◆ 소관 기관별\* 기준 해석이 상이하며 **무형물인 SW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**(클라우드를 통한 수출 등)

\* 전략물자관리원(전략물자 전문판정), 산업부(수출허가), 경찰청(단속)

“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 가이드”  
 과학기술정보통신부(www.msit.go.kr) > 정보공개 > 사전정보공표  
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(www.sw.or.kr) > 해외진출지원 > 수출정보  
 전략물자관리원(www.kosti.or.kr) > 연구보고서 > 기타

## 대응 현황

- ◆ **유관기관**(한국SW산업협회, 전략물자관리원)과 **협력해 설명회 개최 등 SW에 특화된 교육, 홍보, 상담 추진 중**
- ◆ ‘**전략물자제도 SW분야 가이드라인**’ 개발·보급('22.12월), 기준 해석 시 **SW산업 특성을 고려**하도록 산업부, 전략물자관리원과 협의 지속



구분	가이드 참조
① 전략물자 판정 방법	IV.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절차 1. 전략물자 판정 [25~44쪽 참조]
②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기준 및 대상	III.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해 3.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기준 및 대상 [19~23쪽 참조]
③ 허가면제 요건	IV.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절차 2. 수출허가 [51~52쪽 참조]
④ 자율준수무역거래자(CP)	IV.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절차 2. 수출허가 [56쪽 참조]
⑤ 수출거래보고	IV.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절차 2. 수출허가 [52~55쪽 참조]
⑥ 포괄수출허가	IV.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절차 2. 수출허가 [56~57쪽 참조]
⑦ 개별수출허가	IV.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절차 2. 수출허가 [46~52쪽 참조]
⑧ 상황허가	IV.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절차 2. 수출허가 [58~60쪽 참조]



#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 기준 지침 내 '차등점수제' 도입

## 공공SW사업 사업자 선정 시 기술능력 변별력 확보를 위해 차등점수제 도입('21.12월)

### 추진 배경 및 경과

- ◆ 공공SW사업의 입찰참가자간 경쟁시 기술평가점수(90)와 가격평가(10)를 반영하여 우선협상대상자(낙찰자)를 결정
  - 업체간 기술평가점수의 변별력이 크지 않아,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(80~90%미만 저가낙찰) 하는 등 SW제값받기 곤란 및 사업 품질 저하 등 우려
- ◆ 공공SW사업 사업자 선정 시 기술능력 변별력 확보를 위한 차등점수제 도입

#### 주요 추진 경과

- 계약제도 혁신TF('20년, 용역분과) ⇒ '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' 개정(기재부, '20.9.24) '차등점수제' 적용 신설 및 SW진흥 실행전략 발표(과기정통부, '20.12월)
- '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' 개정(조달청, '21.7월)
- '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' 개정(과기정통부, '21.12월)



### 주요 내용

- ◆ (적용범위)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모든 SW사업
- ◆ (임의규정) 기술능력평가 변별력 확보 필요시
  - 해당산업의 특성, 최근 동종사업에 대한 낙찰률, 제안서 평가 점수 분포 등을 고려하여 공공SW사업 발주기관 장이 판단
- ◆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최대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 부여
  - 1순위에게 기술능력평가 최고점수 부여, 차순위부터 최대 3점 이내 점수차 부여
- ◆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가 3점 보다 클 경우 원점수차 적용
- ◆ 차등점수 부여 후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

\* 상세 내용은 『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 지침 적용가이드('22.7월)』 참조 (SW산업정보종합시스템(www.swit.or.kr))





**감사합니다**